

의안번호	2221548
의 퇴 인	김용태 의원
회 답 일	2026. 10. 13.
추 계 번호	26B4978

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의2 (공유재산의 대부 등) 신설	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·양여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고, 공유재산을 대부·양여 또는 사용·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·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	재량규정 의무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조의2 (공유재산의 대부 등) 신설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현행법 상¹⁾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자에게 체험·휴양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○ 개정안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

1) 제6조(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)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자에게 체험·휴양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산을 무상으로 대부·양여하거나 사용·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- 개정안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, 해당 재산의 사용에 따른 임대료 등 사용료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며, 공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
 - 다만, 현 시점에서 무상 사용·수익 또는 양여 대상 재산의 종류와 규모, 사용기간, 기존 사용료 부과 여부 등을 추정하기 곤란하고 조례로 위임되어 있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위진수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위진수	02-6788-4650	wjinsu@na.go.kr

[참고자료 1] 농촌휴양·서비스 산업육성(지역단위농촌관광)

- 목 적
 - 시·군이 주체가 되어 지역 내 농촌자원과 관광자원을 선정하여 체험·관광·식사·숙박이 어우러진 여행 프로그램 제공함으로써 농촌관광 활성화 유도
- 사업내용
 - 지역 고유 농촌자원과 일반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 체류형 여행 상품개발·운영, 조직 및 네트워크 정비·운영, 홍보 및 정보제공 지원
- 지원자격 및 요건
 -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·군수
- 지원내용 및 예산
 - 지원 내용·품목 : 프로그램 운영비, 홍보비, 운영경비 등
 - 지원 기준 : 국비 50%, 지방비 50%
 - '26년 예산 : 1,190백만원(국비 595, 지방비 595)
- 시행근거(법령)
 -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
- 사업신청
 - 사업신청기관 : 농촌관광경영체 및 지자체
 - 사업신청방법 : 공모
- 대상자 선정
 - 지자체(시·군→시·도) 신청을 받아 서면평가, 발표평가 등을 통해 사업대상 선정

[참고자료 2]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

- 목 적

- 공동숙박시설, 특화시설 등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조성·개선 지원을 통해 체험객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

- 근거법령

- 「도농교류법」 제6조(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)
 - 「어촌·어항법」 제49조의2(어촌·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)

-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구 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2030년
합 계	1,600	3,200	3,200	3,200	3,200
-국 비	800	1,600	1,600	1,600	1,600
-지방비	800	1,600	1,600	1,600	1,600

- 사업대상자 및 사업기간

- (사업대상자)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
 - (사업기간) '26. 1. 1. ~ '27. 12. 31. (2개년 사업)

-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

- 지원조건: 지자체 보조(국비50%, 지방비50%)
 - *개인시설물 설치보수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
 - 지원한도액: 마을 당 8억원 이내(국비4, 지방비4)
 - * 1차년도 4억원(국비2, 지방비2), 2차년도 4억원(국비2, 지방비2)